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상속·증여세 –

2016. 3.



머리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들이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 시 소분류 내 업종 변경을 협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유망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 병수



Contents

National Tax Service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 | |
|----------------------------------|----|
|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 6 |
| 2. 상속세 과세제도 | 7 |
| 3. 증여세 과세제도 | 10 |
| 4. 세액의 계산 | 12 |
|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 13 |
| 6.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 15 |
| ▣ 참고 | 16 |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공제액

증여세 계산 흐름도(기본세율) 증여세 계산 흐름도(특례세율)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I. 가업상속공제 제도

| | |
|-----------------------------|----|
| 1.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22 |
|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25 |
|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31 |
| 4.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31 |
|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37 |



Contents

Ⅱ.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
|----------------------------------|----|
|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 38 |
|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
|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42 |
|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44 |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 |
|----------------------------------|----|
| 1. 연부연납 제도 | 46 |
|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 46 |
|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 47 |
|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8 |
| 5. 납세담보의 제공 | 49 |
| 6. 연부연납의 취소 | 50 |
|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51 |
| 8. 연부연납 가산금 | 52 |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
|----------------------------|----|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55 |
|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58 |
|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59 |
|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61 |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 |
|---------------------|----|
| 1. 주식 · 출자지분의 평가 | 63 |
| 2. 주식 등 할증평가 | 63 |
|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66 |

| | |
|--------|----|
| ▣ 참고자료 | 67 |
|--------|----|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관련 서식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기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그의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상속’시키는 것이므로
 - 기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 ◆ 상속(유증 · 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435, 1999.3.2.).

-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2)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 ◆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 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 2016. 3. 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6. 9. 30.임

- ◆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민법§1000조, 1003조)

| | | |
|------|-------------|----------------------------|
|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3 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 예시 (민법§1009조)

| 구 分 | 상 속 인 | 민법상 법정상속분 | |
|-------------------------------------|----------------------------|---|--|
| | | 상 속 분 | 배 분 율 |
|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 남 1 장 녀 1 배우자 1.5 | 2 / 7 2 / 7 3 / 7 |
| |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 남 1 장 녀 1 차 남 1 차 녀 1 배우자 1.5 | 2 / 11 2 / 11 2 / 11 2 / 11 3 / 11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 | 부 1 모 1 배우자 1.5 | 2 / 7 2 / 7 3 / 7 |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 · 제출하는 서류

-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 채무부담 및 공과금 · 장례비 · 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 및 평가명세서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 납부 관할세무서

-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 · 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 ☎ 126 → 2번 → 7번

3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 ▶ **비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 모든 증여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합니다.

▣ 참고 → 증여재산별 증여시기

|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2016. 3. 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6. 6. 30.임

-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 · 제출하는 서류

-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 납부 관할세무서

- ◆ 증여세 신고 ·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 · 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 ☎ 126 → 2번 → 7번

4 세액의 계산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 · 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 등(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각종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사전증여재산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참고 → 상속세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상속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 ◆ 상속세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물납제도

-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요건) ①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합니다.

6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1) 10%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40%의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text{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미납부세액} \times \text{미납일수}^* \times \text{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계산 흐름도 (2016.1.1. 이후)

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3, §8 ~ §10, §15)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 ·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 재산처분, 채무부담액 등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11, §12, §16, §17)

- (비과세) 국가 ·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과세가액

- 공과금 등(§14)

① 공과금 ② 장례비 ③ 채무

+ 가산하는 증여재산(§13)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외 5년(단, 증여세 10%[20%]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13)

- 상속공제 (§18 ~ §24)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영§20의3)

- 부동산 또는 서화 · 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 5백만원 한도
- 비상장주식 :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25)

과세표준

X 세율(§26)

| 과세표준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30% 할증 (대습상속은 할증 안함)(§27)
* '16.1.1.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로 20억원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세액공제

- ①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74)

② 증여세액 공제 (§28)

③ 외국납부 세액공제 (§29)

④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30)

⑤ 신고 세액공제 (§69)

납부할세액

+ 무신고 ·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 · 물납 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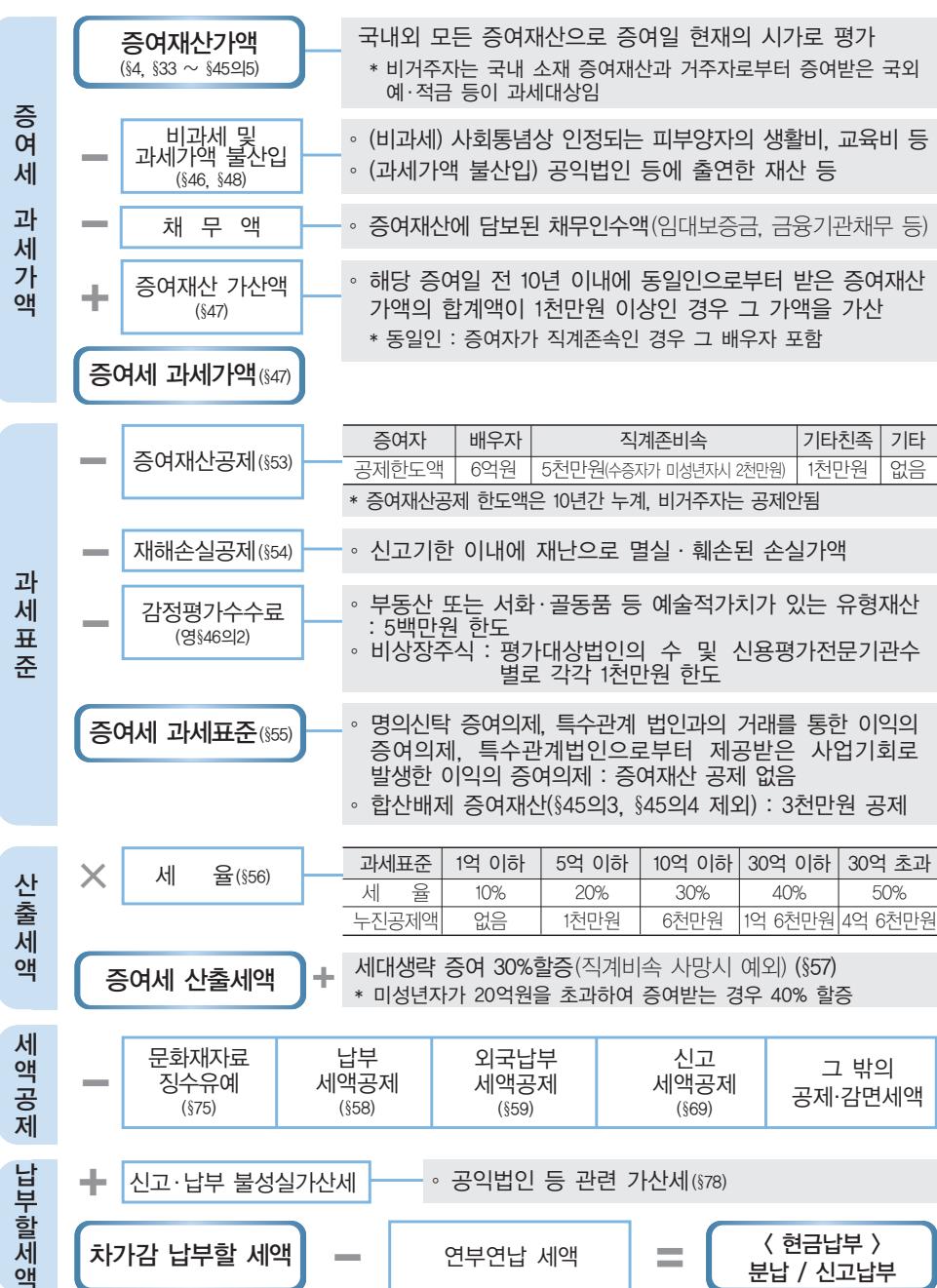
= <현금납부> 분납 / 신고납부 세액

상속공제액 (2016.1.1. 이후)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⑦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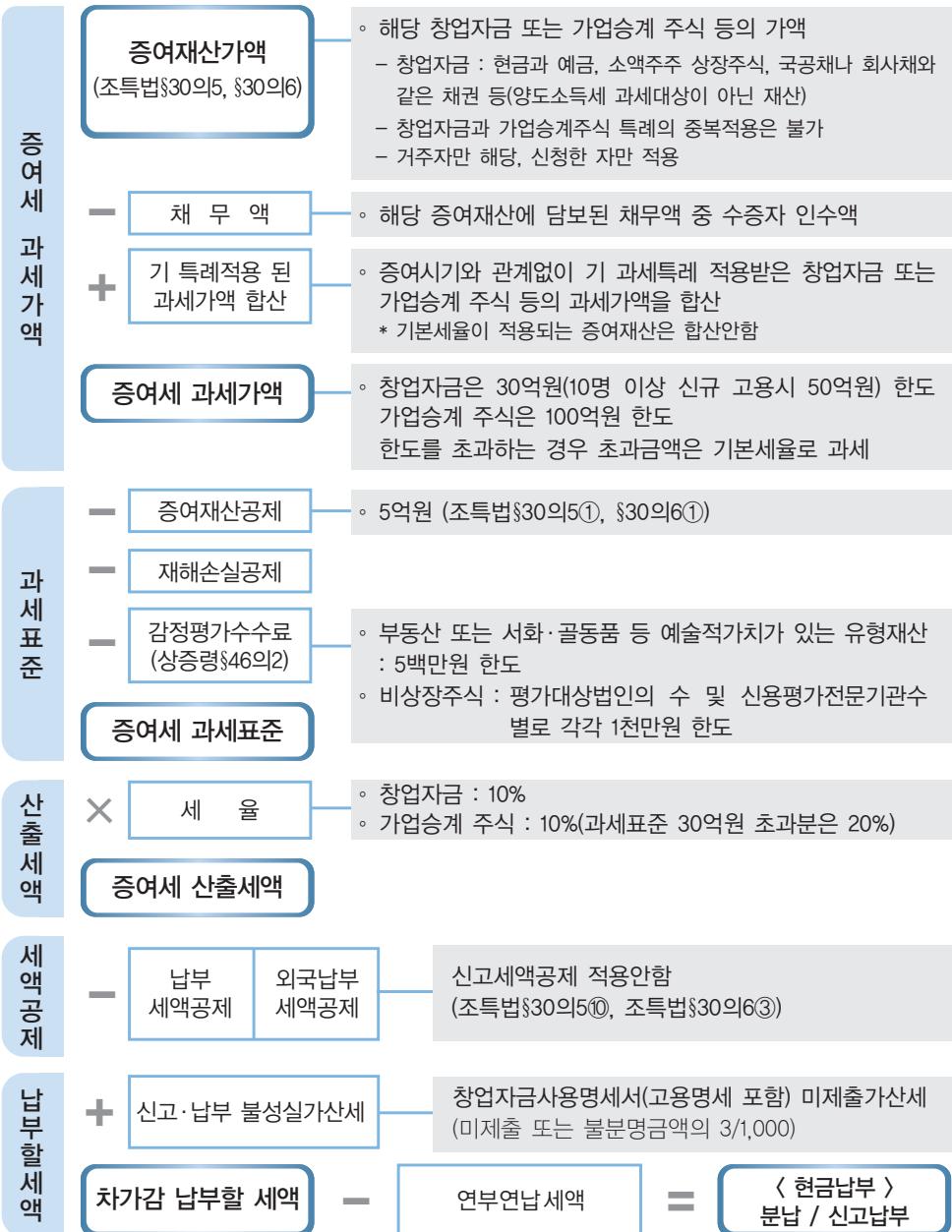
| 공제의 종류 | 상속공제액 |
|---------------------------|---|
|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액 : 2억 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 원 ~ 500억 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200억, 15년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 15억 원) |
|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 ③ 일괄공제 (상증법 §21) | <p>일괄공제액 : MAX (②, ④)</p> <p>② 5억 원 ④ (기초공제액 2억 원 + 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 원) 적용 |
| ④ 배우자상속공제 (상증법 §19) | <p>배우자상속공제액 : MAX (②, ④)</p> <p>② MIN (⑤,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비과세·채무 등) ⑥ 공제한도액 : MIN (i,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ii) 30억 원 <p>④ 5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
|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증법 §22) | <p>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 원 초과시 : MIN (②,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④ 2억 원 ◦ 2천만 원 이하시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⑥ 재해손실공제(상증법 §23)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
|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 공제액 :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80% (5억 원 한도) |
|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상증법 §24) | <p>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p> |

증여세 계산 흐름도 (기본세율, 2016.1.1. 이후)



증여세 계산 흐름도 (특례세율, 2016.1.1. 이후)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적용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6년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 구 분 | 내 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가업상속 공제 | 적용대상 확대 | 영농기업 적용 배제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영위 기업용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비율 50% 미만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
| | 상속인 요건 |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 공동상속 허용 |
| | 상속인 가업종사 예외요건 |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
| | 업종유지 사후관리 완화 | 세분류내 변경 허용 |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0% 이상인 경우 소분류내 변경 허용 |
| 창업자금 증여 세 과세특례 | 한도확대 | 증여재산가액 30억원 |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50억원 |
| | 창업의 범위확대 | 사업자 등록 |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도 포함 |



I .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 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1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 ~ 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 ‘가업상속재산’ 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출자지분 (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 가업상속재산(법인기업)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 사업무관자산(상속 개시일 현재)
 - ① 법인세법 §55조의2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2) 기업상속공제의 확대내용

| 상속개시일 | 공제대상 | 기업상속공제액 | 공제 한도액 |
|---------------|-------------------------------|--|--|
| '07.12.31. 이전 |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기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
| '08.1.1. 이후 |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30억원 |
| '09.1.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기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
| '11.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 까지는 공제 가능 | 상 동 | 상 동 |
| '12.1.1. 이후 | 상 동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기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300억원 |
| '13.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상 동 | 상 동 |
| '14.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 미만 공제 가능 | 기업상속재산가액 | 기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200억원 ◦ 15년이상 : 30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
| '16.1.1. 이후 | 공동상속 허용 | 상 동 | 상 동 |

▣ 사례

기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상속재산만 600억원 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기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구 분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
| 600억원 | 상 속 재 산 가 액 | 600억원 |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500억원) |
| (5억원) | 일 괄 공 제 | (5억원) |
| 5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 50%(누진공제 4.6억) | 세 율 | 50%(누진공제 4.6억) |
| 292.9억원 | 산 출 세 액 | 42.9억원 |
| (29.29억원) | 신고세액공제 | (4.29억원) |
| 263.61억원 | 자진납부세액 | 38.61억원 |

*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225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사례

기업상속 시 상속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상속재산만 600억원
- 상속인은 자녀 1명이며 기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구 分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2년 | 2014년 이후 |
|---------------|-----------------|-----------------|-----------------|----------------|----------------|
| 기업상속재산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 ◦ 기업상속공제 | (1억원) | (30억원) | (100억원) | (300억원) | (500억원) |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과세표준 | 594억원 | 565억원 | 495억원 | 295억원 | 95억원 |
| 산출세액 | 292.4억원 | 277.9억원 | 242.9억원 | 142.9억원 | 42.9억원 |
| ◦ 신고세액공제 | (29.24억원) | (27.79억원) | (24.29억원) | (14.29억원) | (4.29억원) |
| 자진납부세액 | 263.16억원 | 250.11억원 | 218.61억원 | 128.61원 | 38.61억원 |
| 전년대비 감소액 | | △13.05억원 | △31.5억원 | △90억원 | △90억원 |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비고 |
|------|------------------------|--|---|
| 가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규모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독립성기준 |
| | 중견기업* |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된 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기업) | |
|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 | 주식보유기준 |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 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해서 보유 | |
| 피상속인 | 대표이사재직요건 (3중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
|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병역·질병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 | 배우자 |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

* 이 책자의 중견기업은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된 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 ◆ 세법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기업은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함

- 다만, 「조특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하되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기업상속공제 허용

▶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졸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기업상속공제가 가능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참고]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예시)

일반숙박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법무·회계서비스업, 학교,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육탕, 세탁, 예식장, 가사서비스업 등

해석사례

- 2 이상의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재산-1253, 2009.6.23)
- 기업요건 판단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기재부 재산-1039, 2011.12.2)
-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상속증여세과-27, 2014.2.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을 경영 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재부 재산-385, 2014.5.14.)
- 법인 기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기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재산-899, 2009.3.13)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함(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2) 피상속인 요건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⑦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⑧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의 연관성 〉

|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의미) |
|--|---|
|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 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 ’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임 |
|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 |

해석사례

-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172, 2011.4.1.)
-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77, 2013.4.26)
-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기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1179, 2014.11.7.)
-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재부 재산-741, 2014.11.14.)
- 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子회사 주식은 기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함 (서면법규과-842, 2014.8.11)



3) 상속인 요건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석사례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166, 2010.3.18)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712, 2009.4.18)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법인기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그 밖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중여세법 §18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100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기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 → 중 → 소 → 세 → 세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세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매출액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소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 가능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예

| 소분류(예) | | 세분류(예) |
|--------|----------|-----------------------------------|
| 분류코드 | 분류명 | 분류명 |
| 561 | 음식점업 |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및이동음식업, 기타음식점업 |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고무제품제조업 |

| 세분류(예) | | 세세분류(예) |
|--------|----------------|------------------------------|
| 분류코드 | 분류명 | 분류명 |
| 5611 | 일반 음식점업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 2211 |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판단)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text{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10년 후 판단)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 ~ 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예) 10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9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70%(추징율)
10년 및 9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8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80%(추징율)

▶ 기간별 추징율

| 기간 | 추징율 | 기간 | 추징율 |
|-------------|------|--------------|-----|
| 7년 미만 | 100% | 8년 이상 9년 미만 | 80% |
| 7년 이상 8년 미만 | 90% | 9년 이상 10년 미만 | 70% |

해석사례



-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51, 2012.2.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1184, 2010.12.29)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⑥)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해석사례



-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140, 2011.3.17)
- 2개 이상의 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한도액을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함 (기재부 재산-255, 2014.3.11)

사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100%를 적용한 공제대상금액이 20년을 영위한 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 20년 영위기간 기업은 한도액이 500억이므로 공제대상금액 50억원을 전액 가업 상속 공제하는 것이며, 10년을 영위한 기업은 $200\text{억원} = \text{MIN}(500\text{억원} - 50\text{억원}, 10\text{년} \times 50\text{억원})$ 을 가업상속공제로 적용 가능함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시기 계산

-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2)
 -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①과 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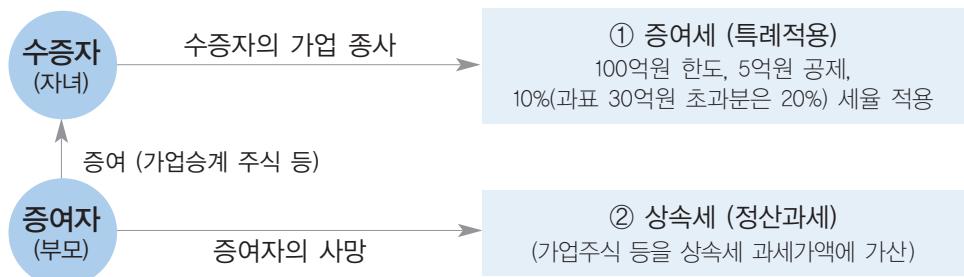
▶ 양도소득세 상당액

-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Ⅱ.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이 규정은 2014.1.1. 개정을 통해 한시적인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 증여일 | 적용가액 | 적용 한도 | 사후관리기간 |
|-------------------------|--------------------------|-------|--------|
| '08. 1. 1. ~ 14. 2. 20. | 특례대상 증여가액 | 30억원 | 10년 |
| '14. 2. 21. 이후 |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 상 동 | 상동 |
| '15. 1. 1. 이후 | 상 동 | 100억원 | 7년 |

▣ 사례 일반적 증여와 기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 임

| 일반적 증여인 경우 | 구 분 | 기업승계주식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
|-----------------|---------------|--------------------|
| 7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70억원 |
| (0.5억원) | 증여 공제 | (5억원) |
| 6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5억원 |
| 50%(누진공제 4.6억) | 세율 | 10%(30억원 초과분은 20%) |
| 30.15억원 | 산출세액 | 10억원 |
| (3.015억원) | 신고세액 공제 | |
| 27.135억원 | 자진납부세액 | 10억원 |

* 기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7.135억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 사례 기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乙) 주식 5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6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乙)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임

| 구 분 | 2014년 | | 2015년 이후 | |
|----------|---------|---------------------|------------------------|---------------------|
| | 특례 적용분 | 특례 미적용분 | 특례 적용분 | 특례 미적용분 |
| 증여세 과세가액 | 30억원 | 30억원 | 48억원 | 12억원 |
| 증여 공제 | (5억원) | (0.5억원) | (5억원) | (0.5억원) |
| 과세표준 | 25억원 | 29.5억원 | 43억원 | 11.5억원 |
| 세율 | 10% | 40% (누진공제 1.6억원) | 10% (30억원 초과분은 20%) | 40% (누진공제 1.6억원) |
| 산출세액 | 2.5억원 | 10.2억원 | 5.6억원 | 3억원 |
| 신고세액 공제 | | (1.02억원) | | (0.3억원) |
| 자진납부세액 | 2.5억원 | 9.18억원 | 5.6억원 | 2.7억원 |
| 자진납부세액 계 | 11.68억원 | | 8.3억원 | |
| 전년대비 증감액 | | | △3.38억원 | |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2081, 2008.8.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 중소기업 등 : I.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등을 말함

해석사례



-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1556, 2009.7.27)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재부 재산-825, 2011.9.30)
-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재산-779, 2009.11.19)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625, 2009.3.25. 서면 4팀-998, 2008.4.22)
-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기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634, 2013.05.31.)

3) 증여 물건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 \right)$$

-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I. 가업상속공제제도 편을 참조(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 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 '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사후관리 경과규정) 2014.12.31. 이전에 가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frac{\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text{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0,000}$$
$$\text{증여세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2015.1.1. 개정 (종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수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II.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으로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1 연부연납제도

- ◆ 상속재산 또는 중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개월

2)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 신 청 기 한 | 허가통지 기한 |
|---|---------------------|--|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 신고기한 이내 |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3개월 |
|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 |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
('10.2.18.이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5 납세담보의 제공

-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6 연부연납의 취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1④)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14조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 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④ 가업상속 공제 후 추징되는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⑤1)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시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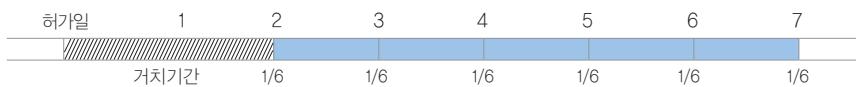
- ①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②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2년 또는 3년의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 ③ 연부연납 기간은 거치기간 후 5년에서 최장 12년에 해당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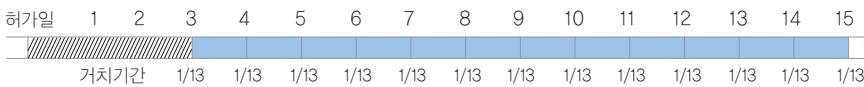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6씩 5년간 분할납부



-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 3년 거치 후 12년 납부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분할납부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left[\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text{상속재산가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기간〉

| 세 목 | | 연부연납기간 (2008.1.1.이후 상속 · 증여분) | |
|-----|--------|----------------------------------|-------------------|
| 상속세 | 기업상속재산 | 50% 미만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
| | | 50% 이상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
| | 일반상속재산 |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 증여세 |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8 연부연납 가산금

-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을 } \times \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 \times \text{연부연납 허가한 총세액 } \times \text{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times \text{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left[\text{연부연납을 }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right] \times \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허가한 총세액 } - \text{분납세액의 합계액} \times \text{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times \text{연부연납 가산율}$$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 '12.3.1.~ '13.2.28. | '13.3.1.~ '14.3.13. | '14.3.14.~ '15.3.5. | '15.3.6.~ '16.3.6. | '16.3.7. |
|------------------------|------------------------|------------------------|-----------------------|----------|
| 연 4.0% | 연 3.4% | 연 2.9% | 연 2.5% | 연 1.8% |

해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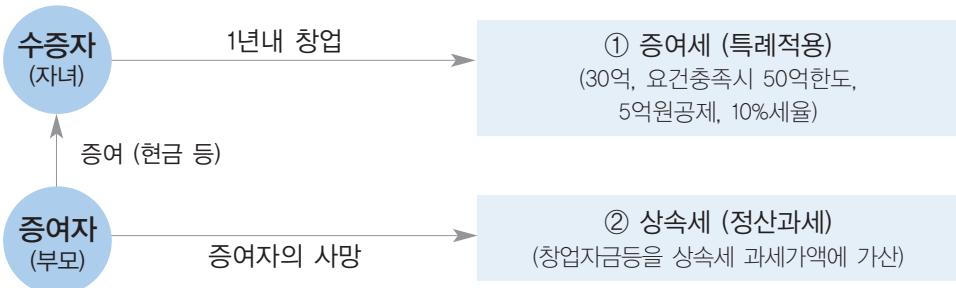
- 기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기간은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재부 재산-1096, 2010.11.10)
- 연부연납을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 재산을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은 제외한 재산을 말함 (재산-3057, 2008.9.30)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재산-1403, 2009.7.10)
-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의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됨 (징세 46101-322, 1999.2.4)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음 (재산-651, 2009.11.6)
-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상속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2152, 2009.8.12)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이 규정은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한시적인 적용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해석사례



-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4457, 2008.12.30)
-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서면4팀-1393, 2007.4.30)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4455, 2008.12.3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 증여세과-360, 2014.9.22.)

3) 증여 물건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 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증여 당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frac{\text{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text{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0,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됨 (기재부 재산-678, 2011.8.22)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361, 2011.7.28)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4팀-3430, 2007.11.28)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재산-4457, 2008.12.30)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4팀-3162, 2006.9.14)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4팀-3160, 2006.9.14)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등(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 포함)은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4팀-2895, 2007.10.9)
- 스크린골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188, 2010.3.30)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17.12.31.까지 상속.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 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1)

1 주식 · 출자지분의 평가

- ◆ 상속 ·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1) 할증평가 대상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 판단

- ◆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 · 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 할증률 〉

| 구 분 | 대기업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
|------------|--------|---------|-------------------------|
| 지분율 50% 이하 | 20% 할증 | 10% 할증 | '17.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
| 지분율 50% 초과 | 30% 할증 | 15% 할증 | |

4) 할증평가 제외

- ◆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 이후 평가분부터)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05.1월부터 '17.12월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해석사례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재산-38, 2011.1.18)
-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 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제외함 (서면4팀-3801, 2006.11.17)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함 (서면4팀-2629, 2005.12.27)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서일46014-10519, 2003.4.24)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재부 재산-614, 2007.5.28)

참고 →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16.1.27. 개정 2016.4.28. 시행))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 관계기업 제도 :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 종속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을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위 1)의 ①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매출액기준과 ②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위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매출액기준과 ②독립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위 1)의 ② 독립성 요건 중에서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015.6.30.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편의,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 22. 건설업 | F |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 24. 음료 제조업 | C11 | |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 31. 운수업 | H |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조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업종 기준

아래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2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신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기업상속 공제업종 |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 X X |
| B 광업 | 광업 | ○ |
| C 제조업 |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워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
| D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하수, 폐기물처리 처리업(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 F 건설업 | 건설업 | ○ |
| G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 |
| H 운수업 | 여객운송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
|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 ○ ○ ○ ○ |
|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협량 서비스업 | ○ ○ |
|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 ○ |
| | 파렛트 임대업 | ○ |

* 종자 및 묵묘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용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 | | | |
|----------------------------|--|------|---|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업 | ○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 출판업 | ○ | |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 | |
| | 방송업 | ○ | |
| | 전기통신업 |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정보서비스업 | ○ | |
| | 무형자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 | |
| |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 | |
| | 광고업 | ○ | |
|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 ○ | |
| | 전문디자인업 | ○ |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 |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 | |
|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
| | 전시 및 행사대행업 | ○ | |
|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 |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 | |
| | 에너지이용 협력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
| | 건물 및 산업설비 정소업 | ○ | |
| P 교육서비스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
| | 사회교육시설 | ○ |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지원훈련기관 | ○ | |
|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 |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노인장애인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통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통음식점업은 제외) | ○ | |
|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은 제외)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 | ○ | |
|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 | |

-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2) 참고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1)의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매출액기준에 적합할 것
 - 3) 참고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1)의 ②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③ 참고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1)의 ② 독립성 요건 (⑤의 규정은 제외)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13.)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 | | | | |
|-----------------------------------|---------|--|--|----------|
| ① 관리번호 | - | | | |
| 신고인 |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 ④ 주소 | (☎) | 전자우편 주소 | |
| 피상속인 | ⑤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 | ⑦ 주소 | | | |
| ⑧ 상속원인 | ⑨ 상속개시일 | | | |
| 구 분 |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⑩ 상속세과세기액 | | | ⑯ 신고불성실가산세 | |
| ⑪ 상속공제액 | | | ⑰ 납부불성실가산세 | |
| ⑫ 과세표준(⑩ - ⑪) | | | ⑱ 납부할세액(합계액)(⑯ - ⑰ - ⑯ + ⑯ + ⑯ + ⑰) | |
| ⑬ 세율 | | | 납부방법 | 납부·신청 일자 |
| ⑭ 산출세액 | | | ⑲ 연부연납세액 | |
| ⑮ 세대생략기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⑳ 물납 | |
| ⑯ 산출세액(⑬ + ⑮) | | | 현금 | ㉑ 분납 |
| ⑰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 | ㉒ 신고납부 |
| ⑲ 계(⑯ + ⑰ + ⑱ + ⑲ + ㉑) | | | | |
| ⑲ 소계 | | | | |
|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공제 제30조의6 | | | | |
| ㉓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년 월 일 | |
| ㉔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㉕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㉖ 그 밖의 공제 | | | (관리번호 : ☎) | |
| 유증 등 재산기액 | | | 세무서장 귀하 | |
| 영리 법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 | | | |
| ㉗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 | |
| | | | | 수수료 없음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기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① 관리번호 | | | | |
|------------------------------------|---|-----|----------|-------|
| 가. 상속받은 총재산 | | | | |
| ② 재산종류 | ③ 소 재 지 | | ④ 수량(면적) | ⑤ 가 액 |
| | 국외재산 | 국가명 | | |
| ⑦ 계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 | | |
| 총상속재산 가 액 | ⑧ 상속재산가액 | | | |
| | ⑨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 |
| ⑩ 합 계 | | | | |
|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⑪ 계 | | | |
| | ⑫ 금양(禁養)임아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
| | ⑬ 문화재가액 | | | |
| | ⑭ 기타 | | | |
| ⑮ 계 | | |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⑯ 공익법인 출연재산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
| | ⑰ 공익신탁 재산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
| | ⑱ 기타 | | | |
| ⑲ 계 | | | | |
|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⑳ 공 과 금 | | | |
| | ㉑ 장례비 용 | | | |
| | ㉒ 채 무 | | | |
| ㉓ 계 (㉔+㉕ 또는 ㉖+㉗) | | | | |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
| | 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 | ㉖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 | | |
| |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 | | |
| ㉙ 상속세과세가액 [㉚ - (㉛ + ㉜ + ㉝ + ㉞)] | | | | |

작 성 방 법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③ 소재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⑥ 비고”란에는 ⑧·⑨·⑩·⑪·⑫·⑬·⑭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번호와 ⑧을 함께 적습니다.
4. “⑧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㉖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5. “⑨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㉖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 공과금”란부터 “㉒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7. “㉓ 계”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21.)

기업상속공제신고서

가. 기업현황

| | | | |
|-----------------------------|---------------------|------------|--|
| 상 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개업 연월일 | | 업 종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중소기업 여부 ※ 해당되는 곳에 ✓ 표 기재 | [] 해당 [] 해당 안됨 | 상장 여부(상장일) | [] 상장(. . .) [] 비상장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나. 피상속인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업영위기간 | |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 |
| 최대주주등 여부 |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다. 기업상속인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업종사기간 |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 주 소 | (☎) | | |

라. 기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 수 량(면적) | 단 가 | 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마. 기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기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기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작 성 방 법

“라. 기업상속재산 명세” 와 “마. 기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기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개정 2016.3.21.)

기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구 분 | 자산종류 | 금 액 |
|-------------------|-------|-----|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토 지 | |
| | 건 축 물 | |
| | 기계장치 | |
| | 기 타 | |
| | ① 계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 |
|---------------------|----------------------------------|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 율 | ③ 총자산가액 |
| | ⑦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⑩ 과다보유현금 |
| | ⑪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
| | ⑫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⑬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⑫) |
| | ⑭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⑬ ÷ ③) |
| | ⑮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⑦ × ⑭) |

다. 한도액 계산

| ⑯ 기업영위기간 | ⑰ 기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⑪ 또는 ⑯) | ⑯ 한도액 | ⑲ 기업상속공제액 (⑯와 ⑰ 중 적은 금액)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 200억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 300억원 | |
| 20년 이상 | | 500억원 | |

| | | |
|------|--|------------|
| 첨부서류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3.2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
| ① 관리번호 | | - | | | |
| 수증자 |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 ④ 주소 | |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 |
| 증여자 | 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 | ⑧ 주소 | | | | (☎) |

| 증여재산 | | | | | |
|-------|------|----------|----------|------|------|
| ⑨ 증여일 | ⑩ 종류 | ⑪ 소재지 | ⑫ 수량(면적) | ⑬ 단가 | ⑭ 금액 |
| | | 국외재산 국가명 | | | |
| 계 | | | | | |

| 구분 | | 금액 | 구분 | | 금액 |
|---------------------------------|----------------------------------|-----------------------|-----------------------------|-----------------------------------|----|
| 증여세 과세 가액 |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⑯ 해당 증여재산 (부표 ⑮가액) | 세 액 공 제 | ⑯ 세액공제 합계(⑯ + ⑰) | |
| |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⑯ 가산 증여재산 (부표 ⑯가액) | | ⑰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 ⑯ 해당 증여재산 (부표 ⑯가액) | | 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 ⑯ 가산 증여재산 (부표 ⑯가액) | | ⑯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⑯ 합계[(⑯+⑯) 또는 (⑯+⑯)] | | | ⑯ 납부불성실가산세 | |
| ⑯ 증여재산공제 | | | ⑯ 차기감 자진납부할 세액 (⑯-⑰+⑰+⑯) | | |
| ⑯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자 | |
| ⑯ 감정평가 수수료 | | | ⑯ 연부연납 | | |
| ⑯ 과세표준(⑯-⑯-⑯-⑯) | | | ⑯ 둘 남 | | |
| ⑯ 세율(10%, 20%) | | | 현 금 | ⑯ 분 납 | |
| ⑯ 산출세액 | | | | ⑯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체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수 수 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16.3.21.)

창업자금 중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
| 과세특례 적용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 |
| | ⑨ 해당 채무액 | |
|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⑪ 계(⑧ - ⑨ + ⑩)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 ⑫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 |
| | ⑬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⑩) | |
| | ⑭ 계(⑫ - ⑬) | |
| | ⑮ ⑪과 ⑭ 중 적은금액 (다만, ⑪ < ⑫이면, ⑪ - ⑯의 금액)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⑯) > ⑰ 해당시판 적음) | ⑯ 증여재산가액(⑧-⑮) | |
| | ⑰ 채무액(= ⑨) | |

|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⑯⑰⑯⑰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⑨ 해당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기액”란에는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기액(증여재산기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년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⑯ 증여재산기액”과 “⑯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⑯ 증여재산기액” 또는 “⑯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16.3.21.)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 |
|-------------------------|--|--|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
|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② 총자산가액 | |
| | ⑦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 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 |
| |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
| | ⑩ 과다보유현금 | |
| | ⑪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 |
| | ⑫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 ⑬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⑪) | |
| | ⑭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⑬ ÷ ②) | |
| | | |
| 과세특례 적용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⑮ 기업자산 상당액 (① × ⑭) | |
| | ⑯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⑰ 합계액 (⑮ + ⑯) | |
|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 ⑱ 총한도액 (100억원) | |
| | ⑲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 ⑰) | |
| | ⑳ 계 (⑯ - ⑲)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㉑ ⑰과 ⑲ 중 적은금액 [다만, ⑰ < ⑯이면, (⑰ - ⑲)의 금액] |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 ㉒ 증여재산가액 (① - ㉑) | |

작성방법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⑦~⑪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⑭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⑬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 "⑮ 기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⑭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 "⑯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 "㉑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㉒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주식등 특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 | | | |
|-------------|----------------------------|--|--------|
| 수 증 자 | ① 성명 ③ 주소 ④ 증여자와의 관계 | ②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 전자우편주소 |
|-------------|----------------------------|--|--------|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 증여자 (가입법인 주식 등 증여자) | |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 | |
|-------------------------|------------------------------|-------------------|------------------------------|---|
| ⑤ 성명 | (<input type="checkbox"/>) | ⑪ 법인명 | (<input type="checkbox"/>) | |
| ⑥ 주민등록번호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⑦ 주소 | | ⑬ 업종 (업태) (종목) | | |
| ⑧ 가업법인의 최대주주부 |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⑭ 개업일 | | |
| ⑨ 특수관계자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 총주 (지분율 : %) | ⑮ 발행주식총수 | 주 | |
| ⑩ 가업영위기간 | ~ | ⑯ 종소기업여부 |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 | | ⑰ 상장여부(일자) | [] 상장(. . .) [] 비상장 | |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 ⑯ 수증일 | ⑯ 수량 | ⑯ 수증주식등 지분율 | ⑯ 단가 | ⑯ 주식등 가액(⑯×⑯) | ⑯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
| | | |

작성방법

- ⑧, ⑨, ⑯~⑰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⑯ 주식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⑯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⑯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중질지(80g/m²)(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신설 2016.3.7.)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기본사항

| | | | | |
|-------------|------|----------|----------|--|
| 수 증 자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
| ④ 증여자와의 관계 | | ⑤ 전자우편주소 | | |
| 증 여 자 | ⑥ 성명 | | ⑦ 주민등록번호 | |
| | ⑧ 주소 | (☎) | | |

2 신청내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⑨ 수증일 | ⑩ 재산종류 | ⑪ 증여재산가액 | ⑫ 비고 |
|-------|--------|----------|------|
| | | | |
| | | | |
| | | | |

3. 사용내역

| 증여받은 재산내역 | | | 사용내역 | | | |
|-----------|--------|------|--------|-------------|--------|------|
| ⑬ 수증일 | ⑭ 재산종류 | ⑮ 가액 | ⑯ 사용일자 | ⑰ 사용용도 및 내역 | ⑱ 사용금액 | ⑲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二〇一〇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자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⑫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자산의 사용용도(예 :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예 :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⑬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 297mm [중질지(80g/m²)(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부표1] (개정 2016.3.7.)

신규 고용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210mm × 297mm [중질지(80g/m²)(재활용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3.21.)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일
예
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품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물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四
四
四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m² (재활용품)]

이 책자는 2016년 3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 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상속 · 증여세 –

| | |
|---------|---|
| 발 행 일 자 | 2016년 3월 |
| 발 행 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 감 수 | 상속증여세과장 박 해 영 |
| 집 필 총 괄 | 행정사무관 김 종 순 |
| 집필 · 편집 | 국세조사관 조 성 호 국세조사관 강 정 호 국세조사관 문 혜 정 |

